

손해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Underwriting의 과제



이 성 용
(대한재보험(주) 기획팀장)

1. 머리말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196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94년 기준으로 세계 보험 시장에서 생명보험은 6위, 손해보험은 11위, 전체 보험시장 규모는 6위로써 거수보험료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 보험시장 규모가 이만큼 커지고 경제전반에 걸친 개방화 및 자유화 추세로 과거와 같은 정부의 보호정책하에서의 협정요율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당국에서는 보험시장 자율화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가격자유화를 지난 '9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격자유화의 시행은 요율경쟁을 통하여 보험회사 경영의 체질개선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물론 궁극적으로 온실에서 자라온 국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국은 가격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이 적고 실시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자유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그간 국내 보험회사의 요율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요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요율을 해외로부터 구득할 경우 재보사를 경유토록 해 온 「보험요율 구득에 관한 협정」이 재보험자유화 정책에 따라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 '97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으로 있다.

본고에서는 가격자유화 및 「요율구득에 관한 협정」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영향 특히, 언더라이팅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손해보험요율은 감독여부에 따라 인가요율과 비인가요율, 경쟁여부에 따라 협정요율과 비협정요율, 자유화 정도에 따라 고정요율과 범위요율을 그리고 자유요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손해보험요율은 대부분 인가요율, 협정요율, 고정요율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가격을 기준으로 보험회사를 선택할 여지가 없었으며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보험가격 자유화의 기본방향은 모든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정요율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요율을 사용토록 하는 범위 요율단계를 거쳐 보험회사가 자유로이 가격을 결정하는 자유요율체제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자유화를 시행하기 직전 국내요율 체계는 고정요율(156종) 87.6%, 범위요율(13종) 5.9%, 자유요율(43종) 6.5%로 대부분 고정요율을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 보험산업의 가격자유화 일정(자동차보험 제외)은 다음과 같다.

상기 표에서 보듯이 가격자유화는 기업보험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보험이 요율협상 측면이나 계약건수 등에서 자유요율 시행에 따른 충격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리고 단계별로 자유요율에 앞서 2년간의 범위요율을 시행하는 것은 가격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자유요율제에 대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같이 자유요율제도를 충격이 적고 실사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예시적으로 시행하면서 과당경쟁에 의한 요율덤핑 및 과도한 요율경쟁에 따른 소비자보호 대책 등 보완조치를 마련하였다.

자유요율의 운용에 있어서는 개발원장이 자유요율 적용종목의 표준요율과 상하 일정범위를 산정,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한 후 보험사업자에 제시토록 하고, 보험사업자는 이 표준요율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5일 이내 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신상품 개발시에는 당해 보험사업자가 표준요율과 상하 일정범위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또는 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였다.

한편, 그동안 대형 기업보험 물건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해 온 「보험요율 구득에 관한 협정」이 당국의 재보험자유화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다.

구분	연도	대상종목
1단계	'93	항공
2단계	'96	선박
3단계	'97	화재, 특종

동협정은 1978년 2월 「선박보험 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데서 처음 비롯되었다. 그후 동년 11월에 「화재 및 특종보험 요율구득에 관한 합의서」, '81년 9월에는 「항공보험 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을 각각 체결하였으나 '83년 10월 화재, 특종, 선박, 항공요율 협정을 모두 통합하여 「보험요율 구득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동 협정의 체결 목적은 보험요율 수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과당경쟁 및 차등요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범위는 요율서에 명시된 협정요율을 사용하지 않는 계약으로 한정하였다.

즉, 각 보험회사가 해외로부터 직접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질의 유사위험에 대한 요율의 이중성 및 과다한 요율경쟁이 예견되는 바 재보사로 구득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요율구득의 혼란과 불공정한 차별요율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가격자유화의 영향

보험가격자유화 조치는 보험사업자에게는 Consumerism 증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실적손해에 의한 가격조정으로 보험서비스의 질

보험종목	범위요율 시행시기	자유요율 시행시기	
선박보험(500톤 미만), 운송보험, 도난보험, 기관기계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근재보험, 동산종합보험, 기타 특종보험(상해보험 및 종합보험을 제외한 특종보험 전체)	'94. 4. 1	'96. 4. 1	
수출입적하보험, 일반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95. 4. 1	'97. 4. 1	
장기손해보험	예정사업비율	'94. 4. 1	'98 이후
	예정위험율	-	'97. 4. 1
	예정이자율	'98 이후	'98 이후

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통계의 관리 및 분석, 언더라이팅 기법 개발을 포함 전반적인 보험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등 보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가격이 보다 합리적 수준으로 산정됨으로써 적정요율에 의한 상품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가격자유화 조치는 여건이 미성숙된 상태에서 업계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원가 이하의 요율제시로 보험회사 경영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에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별로 서로 다른 가격 때문에 보험상품 구매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유요율 체제하에서는 보험사업자의 상호 가격담합이 이루어질 때 요율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은 요율 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보험가격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카르텔로 작용하여 보다 유리한 담보조건 및 요율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 그동안 폐지여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동 협정이 '97년부터 전면 폐지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기

적으로 요율하락으로 인한 경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해외재보험자의 무분별한 덤핑요율로 건전한 보험담보의 확보가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장 저렴한 덤핑요율을 제시하는 해외소규모회사 또는 신용없는 브로커와의 거래로 불량재보험거래가 발생, 보험금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요율구득을 위한 해외 직접출재가 증가되어 국내보유증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요율에 대한 통제기능의 약화로 가격의 적정성이 상실될 수 있다고 본다.

4. 가격자유화와 언더라이팅

계속해서 가격자유화가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에 미칠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실적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매년 10~20개의 회사가 파산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자유방임요율에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79년 1차 보험산업 위기와 '86년 2차 보험산업 위기도 요율인하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88년 12월 보험시장 자유화정책에 따라 그동안 대통령령에 의하여 유지되어 온 인가 협정요율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요율경쟁이 가속화되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요율이 평균 40% 정도 인하되었는 바, 그 결과 '90년부터 보험시장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91년부터는 해외재보험자의 시장철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의 발생으로 보험업계는 '92년부터 업계 자체적으로 요율에 대한 협정을 체결·운영하고 있다.

국내시장도 지난 70년대 초 영문화재보험약관을 인가하면서 일부계약에 대하여는 협정요율 대신 자유요율을 사용토록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신용이 불량한 해외 재보험자가 덤핑요율을 제시, 국내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일부 선박보험은 책임개시일까지 해외재보험처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재보험처리 후에도 고액 보험금회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바 있다.

이상의 몇 가지 예에서 본 바와같이 가격자유화 조치는 무분별한 언더라이팅을 유발하여 보험영업실적의 안정기조를 크게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유요율체제하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언더라이터의 판단은 무시된 채 시장점유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층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요율이 결정되는 예가 많다. 그들은 계약실적에 대한 심층분석은 뒤로 한 채 우선 모집경쟁에서 상대회사를 이

기고, 보험료 수입(Cash Flow)에 의한 투자수익을 겨냥하여 적정수준 이하의 요율로 언더라이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보험의 특성상 손해를 악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입되는 보험료 수입으로 당장 회사경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가격자유화 조치에 따라 보험회사의 모집경쟁이 촉진되고 요율경쟁을 통한 시장쟁탈전은 앞으로 더욱 더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연금, 장기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은 수익율이 크고 더구나 독립대리점 제도의 시행, 브로커제도 도입, Cross-border 허용 등과 맞물려 치열한 모집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요율구득에 관한 협정」 폐지 역시 과당요율경쟁을 유발하여 모집질서를 문란케 하고, 부적정한 요율로 국내사들이 보유를 기피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동 협정이 폐지되면 계약유치를 위하여 값싼 요율위주의 요율구득이 빈발할 것이고 특히, 중·대형기업물건에 대한 요율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재보사를 통해서만 요율구득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사별로 차등요율 제시가 불가능하였으나 구득창구의 다원화로 각 보험회사는 보다 저렴한 요율을 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외국 대형재보험자 및 브로커는 이에 영합하여 원가를 밀도는

덤핑요율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보험가격의 대폭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과도하게 낮은 요율은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담보능력을 취약하게 하여 그 악영향이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

6. 맺는 말

WTO 체제 출범 및 OECD 가입,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 등 대외적 환경과 국내경제 각 부문의 자유화·국제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보험산업의 가격자유화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격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간의 범위요율 시행으로 준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자유요율제를 도입하면서 자유요율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요율을 제시토록 하는 등 건전한 가격경쟁을 통해 보험산업의 발전과 계약자의 이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요율 제도는 업계에서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시장선점이나 「경쟁회사 죽이기」의 한 방편으로 이용한다면 앞으로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동질위험에 대해 차별요율을 적용하는 등 보험회사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적정요율에 의한 보험판매를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보험업계의 구도를 부익부 빈익빈 체제로 만들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무분별한 언더라이팅으로 보험사업자의 지급불능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격자유화에 따른 언더라이팅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험회사가 「공정한 룰」 아래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즉, 요율의 3대원칙인 적정성, 공정성, 비과도성이 준수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요율을 제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들은 산출요율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율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과학적으로 재검립해 나가면서 요율산정에 필요한 기초통계 정비는 물론 종목별 손익분석기법을 고도화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한편, 요율산정기구인 보험개발원에서는 자유요율 제도가 부작용 없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련통계 및 자료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집적·관리·분석하고, 전문인력 육성은 물론 선진 요율산출기법 및 Know-how 축적 등 요율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